

2004. 7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연구위원, 서진교 부연구위원, 김상현 연구원, 임소영 연구원
(02-3299-4382/songsoo@krei.re.kr, 02-3299-4308/jksuh@krei.re.kr, 02-3299-4369/ksh3615@krei.re.kr, 02-3299-4250/lsyjr@krei.re.kr)

1. 배경	/ 1
2. 주요내용	/ 1
3. 평가와 시사점	/ 9
4.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 21
부록. 농업통상용어 설명	/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연구결과물 중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정책 담당자나 농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KREI 농정연구속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1. 배 경

- WTO 슈퍼차이(Supachai)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GC) 오쉬마(Oshima) 의장은 7월 16일 오후(제네바 현지 시간)에 도하(Doha) 라운드 협상의 기본 골격(framework) 초안(이하 초안)을 배포함(WTO 2004).
- 초안은 농업, 비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서비스 무역을 위한 이사회 특별회의의 권고사항,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하나인 무역 촉진 등을 부속서로 담고 있음.
 - 초안은 칸쿤 각료회의 이후 DDA에서 논의된 회원국들의 주된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됨.
- WTO는 7월 27일 일반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원국 사이의 추가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로 이 초안을 제공한 것으로 밝힘.
- 일명 오쉬마(Oshima) 초안이라고 불리는 이 초안은 전체적으로 도하 위임사항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양허사항을 재확인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초안은 먼저 농업 협상이 도하 각료선언의 위임사항과 농업협정에 명시된 장기 목표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시장 중심의 무역체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힘.
- 협상의 최종 균형은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 아래 여러 협상의 결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T)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함.
 - 경제개발 측면에서 농업은 개도국에게 중요하며, 개도국으로 하여금 농정을 통해 개발 목적, 빈곤경감 전략, 식량안보, 삶의 관심 사항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도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개 분야의 개혁은 서로 연계돼 있으며, 국가별 균형과 공정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현재의 양허수준에서부터 감축하여 보호수준과 무역왜곡 보조를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보호 수준과 무역왜곡 보조 수준이 높은 회원국일수록 더 많이 감축해야 할 것으로 명시함.

2.1. 시장접근 분야

- 도하 각료선언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표 1.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내용

	선진국	개도국
관세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접근 방식 • 관세 수준별 감축공식 • 높은 관세율일수록 감축 폭이 커짐 	좌동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터 초과세율을 가진 관세라인 대상 • 관세감축 및 TRQ 증량 • 쿼터 초과세율에 최소감축률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터초과세율을 가진 관세라인 대상 • 관세감축 및 TRQ 증량 • 쿼터 초과세율에 최소감축률 설정 • 선진국의 기여 수준에 따라 개도국의 기여도 결정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TRQ 증량면제 • SSM을 고려 • 민감품목의 선정과 취급방식, SP 선정, SSM 적용 여부는 포괄적으로 고려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적용 여부, 경사관세, 관세 특혜, 열대과일 및 마약작물로부터의 생산전환 작목 등의 완전 개방화는 추가적인 협상 대상임. 	

□ 단일 접근방식: 관세 수준 구간별 공식(Tiered Formula)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이한 관세구조를 감안하고, 단일공식으로 감축.
-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이 이후의 협상에 적용될 것임.
 - 관세감축은 양허세율에서부터 시작함. 실질적이고 유효한 관세감축은 협상의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것임.
 - 최빈 개도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것임. 한편 SDT 조항은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
 - 높은 관세율일수록 감축 폭이 커지도록 해야 하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함.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함.
- 구간의 개수, 각 구간별 상하한선과 관세감축 방식(보기: UR 방식, Swiss 공식 등)은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이 있는 구간별 감축공식에서 관세 상한의 역할은 평가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민감 품목

- 민감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쿼터 초과 관세율을 가진 관세라인을 최대 가능 품목 수로 고려할 수 있음.
- 최혜국 대우(MFN)에 기초한 TRQ 증량의 일부 요소가 각 TRQ 라인에 적용될 것인데, 논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기초가 설정되어야 함. 쿼터 초과 관세율(out-of-quota-tariff rate: OQTR)에는 최소 감축률이 설정될 것임.
- 농업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민감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기여가 있을지 좀 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개도국의 공정한 기여 수준을 정하기 어려움.
- 개도국이 민감 품목을 활용하는 방안은 협상의 틀 제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협상의 핵심 요소는 SDT 부분 일부에 제시되어 있음.

- 반면에, 3개 분야(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상호 연관성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분야에서 선진국이 지닌 의무로 인해 민감 품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지금의 단계에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감 품목의 적용은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관세구조와 방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
- 민감 품목에 대한 취급 방식으로 ‘실질적인 개선’의 원칙이 모든 관세라인에 적용될 것임.
 - ‘실질적인 개선’은 각 관세라인별 관세할당(TRQ) 의무와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달성할 것이지만, 최종 협상 결과는 민감 품목을 고려해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임.

□ 기타 요소

- 현재의 TRQ 대상 품목의 쿼터 내 관세 감축 또는 철폐와 TRQ 관리방식 개선이 협상의 최종결과가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임.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앞으로 합의될 공식에 따라 다뤄질 것임.
- SSG에 관한 문제 제기는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임.

□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T)

- 개도국의 SDT는 협상의 중요 사항임.
- 개도국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로 낮은 관세감축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임.
- 개도국의 민감 품목 선정방식이나 취급방식의 기준은 협상에서 결정될 것임. 특별 품목(SP)과 SSM의 조건, 민감 품목의 선정과 취급방식을 포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은 협상의 합의에 기초해 일부 관세라인을 SP로 지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게 될 것임. SP에 대해서는 TRQ 증량을 요구하지 않음.

- 개도국이 SSM을 이용하는 데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합의 내용이 전제 조건이 될 것임.
- 열대상품의 완전 자유화와 불법 마약작물 재배로부터 작목전환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작물들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것임.
- 관세 특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완전히 인정되고, 관세 특혜의 침해는 합의된 조건 아래 다루어질 것임.

2.2. 국내보조 분야

- 향후 협상에 반영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음.
 - 국내보조 부분에서 SDT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낮은 관세감축률 및 장기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농업협정문 제6조 2항¹⁾ 준치
 - 선진국의 경우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 적용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무역왜곡 보조 감축
 - 장기 개혁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개별 무역왜곡 보조에 대한 최소감축률 적용 및 규율 강화

표 2. 국내보조 분야 주요 내용

보조 분류	주요 내용
① 감축대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규모별 감축공식에 따른 조화방식 적용 • 품목특정 AMS 상한 설정 및 특정품목 상한 감축
② 최소 허용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감축
③ 블루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강화 • 이행연도까지 평균 농업 생산액의 []% 이하로 감축 (상한설정)
④ 무역왜곡보조 총액 (①+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규모별 감축에 따른 조화방식 적용 • 최소감축률 제시
⑤ 허용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 및 생산효과가 없거나 최소인 허용보조 확립 • 기준에 대한 검토

1) 개도국의 경우 농업의 일반 투자보조와 저소득계층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 대상 농업 투입재 보조, 마약작물 재배로부터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생산자 대상 국내보조는 감축약속에서 면제된다는 농업협정문 상의 규정임.

□ 보조 규모별 감축공식(tiered formula)에 의한 전체 감축

- AMS, 최소 허용보조 및 블루박스의 총액에 대한 규모별 감축공식을 적용
 - 무역왜곡 보조가 높은 회원국은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적용
- 국내보조 규모별 감축공식에 대한 협상지침 제시
 - 무역왜곡 보조 총액 감축수준은 최소감축 수준임.
 - 즉, 개별감축공식에 의한 무역왜곡 보조 구성요소(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의 감축 수준이 무역왜곡 보조 총액의 감축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구성 요소별 감축수준이 상한으로 설정될 수 있음.
 - 블루박스는 최근 대표기간의 기존 블루박스 수준과 과거 평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하여 산출

□ 보조 규모별 감축공식에 의한 감축대상 보조(AMS)

- 조화방식에 의한 AMS 감축
 - 보조 규모별 감축방식에 의한 실질적인 감축 제시
 -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 적용
 - 개별 보조 품목 간 국내보조의 전환을 통해 농업협정의 목적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기준 연도의 개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품목특정 AMS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특정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
- 최소 감축률에 의한 AMS 감축
 - 회원국들이 모든 무역왜곡 보조의 필수 감축수준 달성을 목표로 공식에 의한 감축보다 더욱 감축할 수 있음.

□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 []% 감축함.
 - 최소 감축률 적용

□ 생산 제약 아래 직접지불(Blue box)

- 회원국들이 농업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블루박스의 역할을 인정하고, <대안 1> 혹은 <대안 2>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협정문 제6조 5항²⁾이 조정될 수 있음.

<대안 1>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로써

- (i) 고정, 불변 기준 면적 및 단수에 기초한 직접지불,
- (ii) 고정, 불변 기준 생산수준의 85% 또는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혹은
- (iii) 고정된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 등임.

<대안 2> 현재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로써

- (i) 고정, 불변 기준 면적이나 단수에 기초한 직접지불,
- (ii) 고정, 불변 기준 생산수준 85% 또는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그리고
- (iii) 이런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생산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등임.

- 블루박스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감축하도록 함.
 - 이행기간 종료시점까지 과거 평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율과 과거 기간 설정은 추가 협상에서 다루고, 일부 회원국의 무역왜곡 보조에서 차지하는 블루박스의 비중이 예외적으로 큰 경우, 상한을 기준으로 블루박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해당 회원국은 불평등한 감축을 하도록 요청받지 않게 신축성을 부여함.
- 위 기준은 블루박스가 AMS보다 덜 무역왜곡적인 보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토 필요성 제시
 - WTO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제시
 - 농정개혁의 필수 정책으로서 최근 사용 실적이 있는 블루박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

2)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따르면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은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됨.
 (i) 고정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
 (ii)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또는
 (iii) 고정된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 등임.

□ 허용보조(green box)

- 그림박스 기준에 대한 재검토
 - 무역왜곡 효과 및 생산효과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 그린 박스의 기본 개념과 원칙 및 효과에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을 적절히 반영
 - 새로운 규범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의무체계 보완

2.3. 수출 경쟁 분야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및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철폐하도록 요구
 - 이행계획서 상의 수출보조, 수출신용의 무역왜곡 요소, 직간접 보조 및 손실보험을 포함해 국영무역기업(STEs)의 수출판매에 관한 무역왜곡 관행, 운영상 효과적인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규정 등을 감축하거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제안함.
- 개도국의 경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를 위한 이행기간을 확대함.
 - 개도국은 농업협정 9조 4항의 SDT 규정의 혜택을 계속 누림.³⁾

2.4. 기타

- 최빈 개도국(LDC)은 SDT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감축의무를 지지 않음.
 - 면화에 대해서는 3개 분야에 걸쳐 일부 LDC의 요구가 반영될 것임.
 - LDC의 무관세 및 무쿼터는 협상에서 다루도록 함.
- 새로 WTO에 가입한 회원국의 관심 사항은 합의될 사항을 전제로 고려될 것임.
- 3개 분야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기적절하고도 완벽한 공지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나아갈 것임. 이에 관한 개도국의 관심 사항도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임.

3) 출하, 등급 향상, 가공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공한 수출보조나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 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등의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이행기간 개도국들은 약속 이행 의무가 면제됨.

- 이 밖에도 부문별 발의(initiative), 상이한 수출세, 지리적 표시제 등의 문제가 다루어질 것임.

3. 평가와 시사점

3.1. 개괄

□ 초안은 기본 골격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도출을 위한 타협안

- 초안은 국경보호 및 보조 감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주로 제시하면서 핵심 쟁점 사항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협상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 이는 농산물 수출국과 G-10, 그리고 EU 등 주요 국가 간 농업 분야 핵심 쟁점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DDA의 진전을 위해 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임.
- 최근까지의 DDA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7월 일반이사회에서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DA의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고,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7월까지 기본 골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관세감축 등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해 최근까지 주요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서(Groser) 농업협상 회의 의장은 7월 말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만을 언급한 채 향후 협상과제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타협을 도출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 배포함.
-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안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원칙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란 점에서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명백한 반대의사 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7월

말 일반이사회에서 모델리티 기본 골격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 분야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양쪽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초안의 기본 원칙

- 초안은 도하 각료 선언문에 의한 위임사항(mandate)을 인용하면서 국경보호와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을 요구함.
 - 이와 더불어 초안은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T)와 관련해 개도국의 개발 목적에 부응하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도하 위임사항과 함께 초안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i) 성과인정 원칙, (ii) 조화(harmonization) 원칙, 민감 품목에 대한 배려임.
- 성과인정 원칙은 UR 협정에 따라 또는 그 이상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해 온 회원국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감축은 양허수준(bound levels)을 근거로 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지금 적용하는 실행 관세율이 양허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실행 관세율이 아닌 양허 관세율을 감축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UR 약속사항 이상으로 이행한 회원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임.
 - 반면에 이 원칙은 UR 때 과대 계상된 양허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개혁의 강도를 낮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조화 원칙은 국경보호 및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함으로써 회원국 및 개별 조치 사이에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임.
 - 관세가 높은 품목과 보조 규모가 큰 회원국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임.
 - 그러나 개도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SDT의 조항 아래 조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선진국의 민감 품목 및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인정 등은 조화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3.2. 시장접근 분야

가. 평 가

□ 조화 원칙에 따른 관세 수준별 감축 방식(tiered approach)의 채택

- 관세감축의 기본 원칙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에 모두에 적용되는 단일 접근방식을 명시하고, 관세 수준별 감축공식에 따른 관세 감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을 추구함.
- 관세 감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관세 수준에 따른 분류와 각각의 감축률에 관해 여전히 이견이 있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감축공식의 제시는 유용하지 않다는 NG5(미국, 브라질, EU, 인도, 호주 등 협상 영향력이 큰 5개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됨.⁴⁾
 -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동향을 감안해 볼 때 내면적으로 UR 방식 또는 선형 방식의 관세감축을 주장하는 EU, 인도, G10 수입국 그룹과 스위스 공식을 주장하는 미국 및 일부 수출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견절충에 실패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초안은 관세 수준별 감축공식과 민감 품목에 대한 구별된 취급 아래 관세 상한의 역할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관세 상한의 쟁점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음.
 -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G-10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관세 상한의 채택 여부가 불확실하게 됨.
 -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G-10과 미국 등 수출국의 대립이 예상됨.

4) 구체적인 수치는 양허 기준과 수준을 밝히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논의 단계에서 제시될 사항임.

5) NG5 차원에서 8개의 관세감축 공식이 논의됐으나, 결국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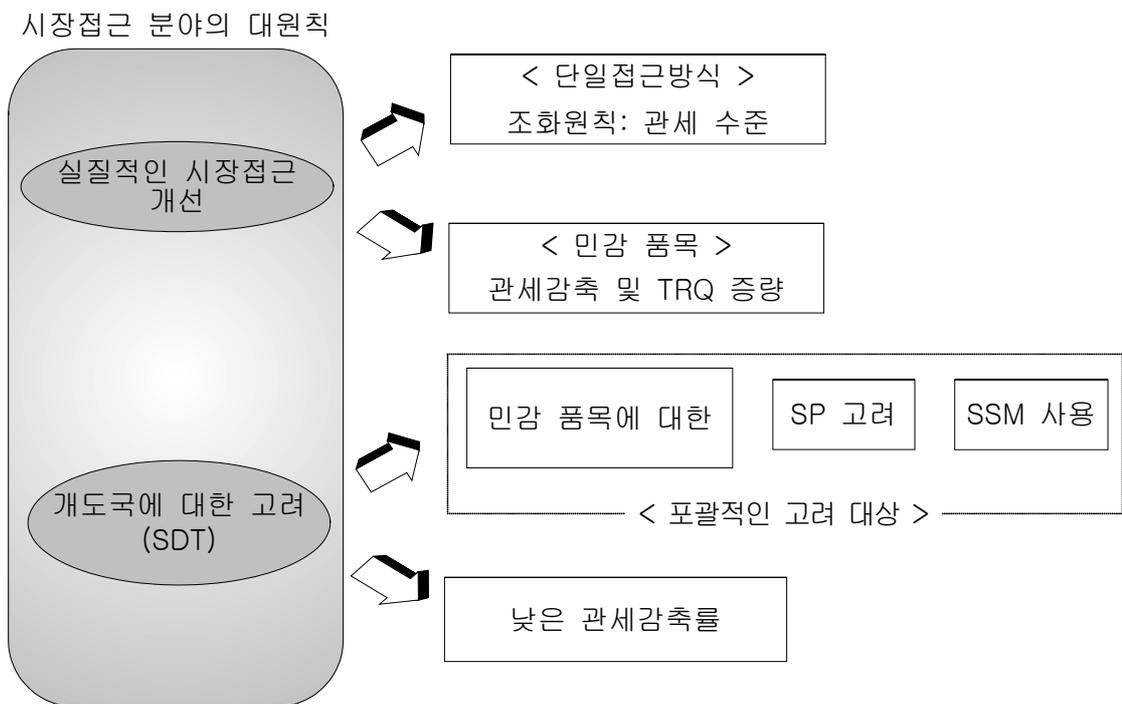
□ 민감 품목에 대한 기본 처리방향 제시

-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시장접근과 관련 신축성(flexibility)을 인정하되, 관세 라인별로 최소한의 관세 감축과 TRQ 양허의 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함.
- 민감 품목의 최대 수는 현재의 쿼터 초과 관세율을 감안한 관세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품목 선택에 관한 기준, 곧 현재 TRQ 대상이 아닌 품목도 민감 품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불확실함.
- 개도국의 민감 품목 문제는 선진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상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나, 이로 인해 개도국의 반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기 타

- 관세감축에 대한 개도국 우대가 이전 초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낮은 감축률의 적용만 언급하고 이행기간 우대는 빠짐.

그림 1. 기본 원칙 및 실현방식



□ 전체평가

- 모든 품목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접근 보장을 추가로 언급하여 수출입국간 균형을 추구함.

나.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양허 관세율은 63.2%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표 3>, 고율 관세(관세율 100% 이상) 품목(HS 10단위로 126개, 약 8.8% 비중)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구조임<그림 2>.
- HS 10단위로 농산물은 총 1,452개이며, 이 가운데 관세를 제시하지 않은 쌀 관련 품목 16개를 빼면 1,436개가 되며, 여기에서 100% 이상 고율 관세 품목은 126개(전체의 8.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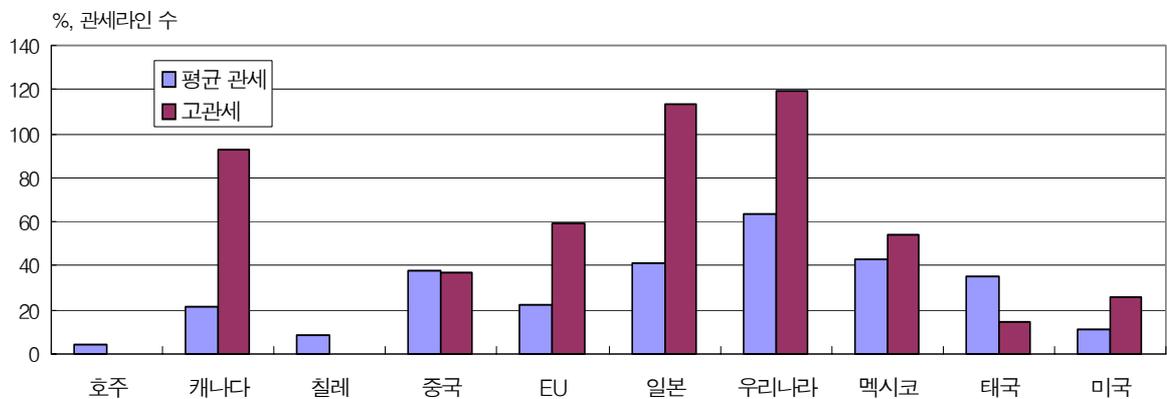
표 3. 국별 평균 양허세율 비교

	한국	태국	멕시코	중국	칠레	미국	캐나다	EU	호주	일본
평균 양허세율	63.2	35.4	42.8	37.9	8.9	11.1	21.3	22.1	4.0	41.3

자료: 최세균 등(2002)

주: 한국은 2004년 품목기준, 다른 국가들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기초함.

그림 2. 주요국의 관세구조 비교



자료: 최세균 등(2002)

- 따라서 관세 수준별 감축공식을 적용할 경우 고율 관세 품목이 더 큰 관세감축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관세감축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관세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파급 영향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관세감축과 TRQ확대) 수준에 크게 달려 있고, 이들 품목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다면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음.
 - 민감 품목에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민감 품목의 시장개방요건인 관세감축과 TRQ의무를 통한 조합이 관세 수준별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 폭 보다 작아질 것이라는 전제임.
- 초안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에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 (TRQ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운데 주요한 품목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임.
 - 쿼터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쌀, 보리, 대두,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유제품, 감귤, 인삼 등 실제 품목 수 기준으로 63개이며, HS 10단위로 190개 또는 전체 관세라인(쌀 포함)의 13%에 이룸.
- 따라서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폭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이번 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 영향이 결정될 것임.
 - 다만 민감 품목에 대해 최소의 관세감축과 적절한 TRQ 확대가 적용될 경우 민감 품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가운데 TRQ 대상 품목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축산물과 과실류임. 따라서 이들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파급 영향 파악의 관건임.
 - 이들 품목의 관세는 20~50%이어서 관세 수준별 구간 및 감축률에 따라 관세 감축의 영향이 결정될 것임<표 4>.
 - 그러나 축산물과 과일류는 관세 수준보다는 동식물 검역 조건이 실제 수입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세감축만으로 그 파급 영향을 진단하기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쿼터 초과 관세율의 적용 품목 수만큼 자기 선택 방식으로 민감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요 축산물과 과일류를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관세감축 폭을 낮출 여지가 발생함.

표 4. 우리나라의 관세 구간별 품목 현황

관세구간 ¹⁾ (%)	품목 수 (개)	평균관세율 (%)	주요 품목 ²⁾	생산액 ³⁾ (10억원)
0세율	29	0.0	종자류	
1-10	186	5.8	종자,원피 등	
10-15	139	13.1	동물, 나무	
15-20	256	18.7	닭고기 등	817
20-30	286	26.5	돼지고기, 계란	2,584
30-40	104	35.1	쇠고기	1,786
40-50	122	44.7	과일류, 버섯, 채소	2,526
50-60	124	53.8	과일주스	
60-70	20	65.1	육류통조림	
70-120	47	82.4	바나나, 감, 동물의 설육	
120-150	7	138.9	양파, 감귤	881
150-250	24	206.9	낙농품, 천연꿀, 밤, 땅콩	1,517
250-350	24	287.2	보리, 옥수수, 감자, 고추	1,634
350-450	18	381.5	마늘, 고구마	749
450-600	13	521.3	대두, 녹차, 잣, 감자전분	295
600-700	7	618.3	참깨, 녹두, 대추	252
700-800	16	755.9	인삼류	380
800이상	14	831.4	매니옥, 곡물전분	
계 ⁴⁾	1,436	63.2		

주: 1) 하한치는 초과하되 상한치는 포함됨(예: 10-15는 10% 초과 15% 이하).

2) 음영처리 된 품목은 TRQ 대상 품목임.

3) 생산액은 1999~2001년 평균 수준이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제시함.

4) 쌀은 관세화 유예 상태이므로 제외시킴.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2』,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 한편 쌀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쌀이 개도국 지위 아래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TRQ 증량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고, 선진국의 조건아래에서는 민감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며, 관세 상한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판단됨.

3.3. 국내보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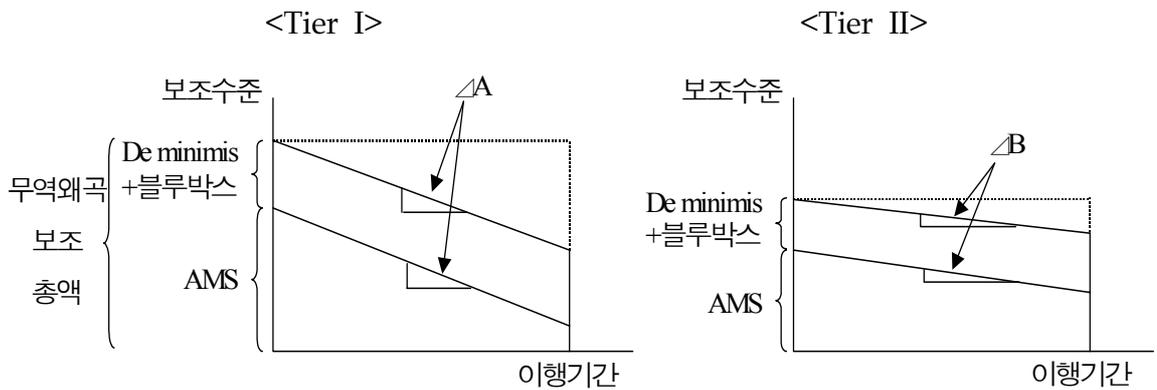
가. 평 가

□ 무역왜곡 보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제시

- 성과인정 원칙에 따라 보조의 감축은 양허 수준에서 이뤄짐.
- 조화 원칙에 따라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무역왜곡 보조 수준이 높은 것에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함.
 - 이는 국내보조가 주로 선진국에 해당되며, 선진국이 국내보조를 통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이른바 덤핑(dumping)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보조에 관한 규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http://www.iatp.org/>>.
- 감축은 보조 수준별(tiered) 감축공식을 사용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품목에 대해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임.
- 보조 수준별 접근방식은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이를 구성하는 ① AMS, ②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③ 블루박스에 대해 각각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되, 3개 구성요소의 감소 합이 보조총액의 감소가 되도록 함<그림 3>.
 - 예를 들면, 보조 수준을 Tier I과 Tier II 구간으로 나누고, Tier I이 Tier II보다 초기 보조수준이 높다고 가정하면, 조화 원칙에 따라 Tier I의 감축률(ΔA)이 Tier II의 감축률(ΔB)보다 크게 됨.
- 각 구성요소별 최소 감축률과 보조 총액의 최소 감축률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회원국은 보조별 감축 폭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음.
 - 감축대상 보조 수준인 AMS도 보조 총액과 마찬가지로 보조 수준별로 다른 감축률이 적용하여 조화방식에 의해서 감축하고, 품목별 AMS의 상한도 과거 사용 실적을 근거로 상한이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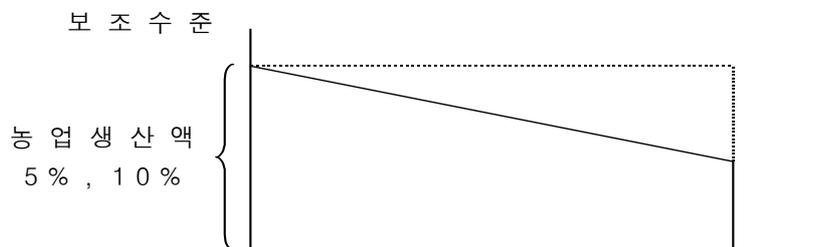
- 최소 허용보조의 경우 최소 감축률에 의해 일정 비율로 감축하고, 블루박스의 경우 기존 블루박스 실적과 과거 평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 중 높은 것을 사용하여 감축하되, 최종 이행기간까지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그림 3-①, 3-②>.
- 이러한 국내보조는 다시 이중 규제를 받게 되어 있음<그림 3-③>.
- 무역왜곡 보조총액 감축수준이 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의 개별감축수준 보다 클 경우에는(Case 1) 개별 감축수준까지 감축하도록 제약을 부과함.

그림 3. 무역왜곡보조 총액 및 감축대상 보조(AMS)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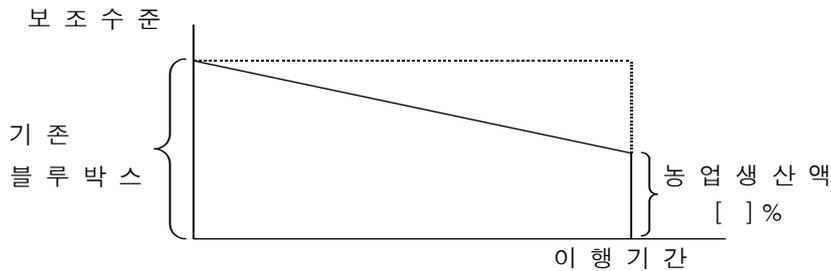
주: 무역왜곡 보조 총액은 AMS, De minimis, 블루박스의 합을 의미하며, 블루박스의 산출은 최근 대표기간 지급실적과 과거 평균 농업 생산액의 일정 비율(%) 중 높은 것을 사용함.

①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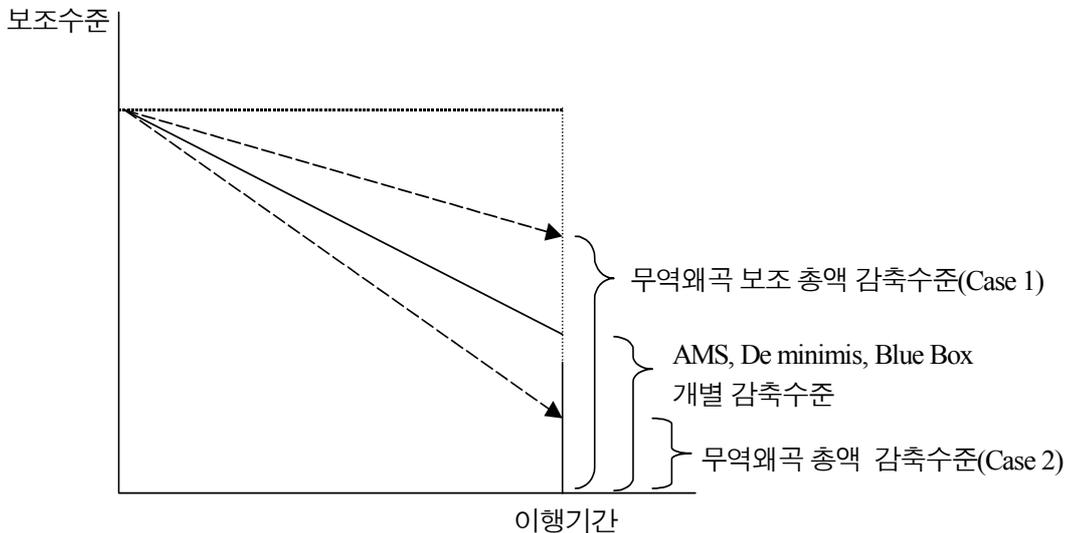


주: 최소 허용보조의 경우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은 5%, 개도국은 10%임.

② 블루박스(Blue Box) 감축



③ 이중규제의 예: 상한 설정



- 무역왜곡 보조 총액에 대한 규율이 보조 조치 사이의 전환(box shift: AMS에서 블루박스로 이동)을 통한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면,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보조대상 품목 사이의 전환(product shift: 전체 AMS 한도 안에서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반면에 다른 품목의 보조는 감축)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송수 등 2004).
- 협상 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어오던 블루박스는 지금처럼 휴경을 전제로 한 조치에다 고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기준 수준을 추가로 부가한 <대안 1>과, 현재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대안 2>가 새로 제시됨.

- <대안 1>은 지금의 농업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기준을 최근 연도로 갱신하지 않는다면, 블루박스를 활용하고 있는 EU, 노르웨이, 일본 등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하는 지금의 경기변동 대응 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새롭게 정의될 블루박스에 넣으려고 하는 미국의 경우 생산해야 주는 보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대안 2>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임.⁶⁾
 - 미국의 CCP는 과거 기준면적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지만, 현재의 시장가격에 따라 그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조치임(박동규 등 2004).
- 블루박스에 상한이 새롭게 설정됨으로써 무역왜곡 보조를 구성하는 3개 구성요소에 모두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가 나타남.

□ 그린박스는 그 기준을 검토할 것이란 방향만 제시

- 그린박스의 기본개념과 원칙은 유지하되 기준에 대해서는 본디 목적에 맞게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칸쿤 각료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세부원칙 수립 단계로 넘긴 것으로 판단됨.

나.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품목별 AMS 감축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AMS 활용 가능 품목을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로 한정시킴으로써, 시장 개방 확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 조치를 제약할 수 있음<표 5>.
- 특히 AMS 사용 실적의 90% 이상을 쌀의 약정수매제도에 할애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쌀 정책수단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AMS의 대부분을 쌀에 대한 활용으로 고착시켜야 하는 제약을 안게 됨.

6) 특히 새로운 블루박스와 관련 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엄격한 규율 설정을 주장하는 브라질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옴(Inside US Trade 2004). 이에 따라 브라질과 많은 수출 개도국들은 협상에서 <대안 2>의 생산 중립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우리나라의 AMS 대상 품목

이행연도	AMS 대상 품목
1995	쌀, 보리, 옥수수, 유채
1996	쌀, 보리, 옥수수, 유채
1997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8	쌀, 보리, 옥수수
1999	쌀, 보리, 누에고치
2000	쌀, 보리, 유채

자료: WTO(<http://www.wto.org>)

- 블루박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과거 농업 총 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블루박스 조치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안 1> 안에서 과연 공급 관리(예: 생산 조정이나 휴경)를 수용할 수 있을지, 또한 <대안 2>처럼 생산을 전제하지 않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임.
 - 2002년에 도입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경우 가격과 연계된 조치이고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 개념에 맞게 하려면 수정이 필요함.
- 그러나 블루박스가 AMS나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기조 아래 특정 품목을 지원 하는데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무역왜곡 보조 총액에 대한 상한 설정과 감축은 감축대상 보조에서 블루박스 또는 그린박스로 농정개혁을 추진해 가려고 계획하는 우리나라에 농정 신축성을 제약하는 것임.
 - 1995~2000년에 우리나라의 AMS 사용 규모가 감소한 반면에 최소 허용보조의 규모는 늘어났는데, 무역왜곡 보조 총액에 상한 설정과 감축은 이러한 보조 전환에 제약을 줌<표 6>.

표 6.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이행 실적

단위: 억 원

연도	AMS	그린박스	최소 허용보조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수출보조
1995	20,754	39,902	2,822	204	12
1996	19,674	51,829	3,438	309	24
1997	19,400	57,962	6,553	378	30
1998	15,628	53,607	7,836	415	36
1999	15,519	54,566	4,865	621	149
2000	16,909	50,541	5,297	506	191

자료: WTO(<http://www.wto.org>)

4.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4.1. 협상 전망

- 초안은 7월 19일 열리는 수석 대표회의(Head of Delegation: HOD)를 시작으로 10여일 동안 회원국들 사이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7월 27~29일에 열리는 일반이사회(GC)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논의 진척에 따라 제안된 내용이 일부 수정돼 채택되거나 초안이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민감 품목의 선정 기준 및 방식과 관련 수출입국 사이의 입장 대립이 예상되며, 관세 상한에 대한 표현과 해석도 논쟁거리가 될 것임.
 - 특히 국가 간 민감 품목의 최대 허용 개수의 차이가 주목됨<표 7>.
 - 미국과 많은 수출국이 강조해 온 관세 상한에 대한 명확한 표현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임.
- 개도국들은 관세감축과 관련 그 유예기간의 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시키려고 할 것이며, 특별품목을 주장하는 개도국들은 특별품목(SP)에 대한 관세감축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주요국의 쿼터 초과 관세라인의 비교

관세라인 회원국	TRQ 이외	쿼터내(in-QT)	쿼터초과 (out-of-QT)	쿼터초과/전체 (%)
호주	785	11	9	1
브라질	1,415	4	4	0
캐나다	1,020	141	151	12
EU	1,593	333	284	13
일본	1,181	188	122	8
노르웨이	722	368	502	32
스위스	854	236	395	27
태국	683	35	54	7
미국	1,198	190	182	12

자료: Gibson et al.(2001)을 근거로 산출함.

- 관세감축 공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초안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견을 절충한 것이므로 DDA 협상의 전반적인 부진을 고려할 때 초안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적절한 수정 요구가 설득력 있게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보조 규율은 이전 초안들에 의해 제시된 내용에다 일부 보조수준별 접근방식을 접목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음.
 - 이런 점에서 회원국에 낮설지 않은 측면에 있으나,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이나 새로운 개념의 블루박스와 관련해서는 견해차이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초안 전체의 채택 여부는 개도국 그룹인 G90의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와 면화보조에 관한 입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한 원인이었던 싱가포르 이슈와 관련해 개도국들이 요구해 온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화 등이 초안에서 빠지고 무역 원활화만 제시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임.
 - 반면에 서부 아프리카 4개국 등의 관심 사항인 면화보조 문제가 G90의 주장대로 농업협상 이외의 독립된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농업협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종합할 때, 이번 초안은 원칙 중심의 제안과 추후 협상으로 여러 쟁점 사항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7월 말까지 초안에 합의해야 남은 DDA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제약 아래 있다는 점에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4.2. 우리나라의 협상대응 방향

가. 협상의 대원칙

- 오쉬마(Oshima) 초안은 ‘국경보호와 국내보조의 실질적이고도 유효한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 ‘유효한’이라는 표현은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협상 타결 이후 수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실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위와 같은 문구를 기초로 삼아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나. 시장접근분야

□ 관세 상한의 삭제

-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 문제가 추가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단 유보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관세 상한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관세 상한은 우리나라, 일본 등 소수의 회원국에 한해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임.
- 삭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감 품목에 대해서 관세상한 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문장의 적절한 수정을 요구함.

□ 민감 품목의 자기 선택과 관세감축의 최소화

- 민감 품목의 자기 선택이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TRQ 품목이 아니더라도 민감 품목으로 선택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만약 초안의 관세라인을 품목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민감 품목은 TRQ 품목과 같아져 TRQ 품목 이외의 중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됨.
 - 관세라인을 단순히 개수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TRQ 품목의 관세라인 수에 해당하는 만큼 민감 품목을 선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품목 선정은 자기 선택의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음.
- 최소 민감 품목 수를 확보하고 품목 선택시 각 국별 사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기 선택 방식을 관철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민감 품목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최소한의 품목 개수를 확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보된 품목 개수 안에서 자기 선택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민감 품목에 관세 수준별 감축 방식에 적용되지 않고, 이와 독립된 감축방식이 적용되도록 주장해야 할 것임.
 - 관세감축과 TRQ 약속에 근거한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은 명확한 기준이 아님.
- 관세감축의 이행 기간에 대한 개도국 우대사항이 명시되도록 요구함.

다. 국내보조분야

□ 보조 총액 및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의 삭제

- 비록 우리나라를 비롯해 G10이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왜곡 보조 총액에 대한 상한 설정 및 감축과 품목별 AMS 상한 설정과 그 일부 감축은 이미 칸

쿤 각료회의 초안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고, 많은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삭제 요구가 쉽게 관철되기는 어려운 현실임.

- 그렇더라도 G10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등과 공조 체제를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적어도 추후 협상에서 검토하자는 유보를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됨.

□ 블루박스의 활용 가능성 명료화

- 블루박스 조치는 초안이 제안한 내용보다 요건이 완화된 것 또는 공급통제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바람직함.
- 우리나라처럼 이전에 블루박스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회원국도 AMS 감축 등을 통해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블루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만약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 임송수, 김상현. 2004.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54.
-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C2004-6.
- 최세균, 임송수, 어명근.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48.
- Gibson, P., J. Wainio, D. Whitley, and M. Bohman. 2001. Profiles of Tariffs in Global Agricultural Markets. Economic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796.
- Inside US Trade. 2004. WTO Draft Framework Likely to Be Less Specific on AG Than Cancun Text. World Trade Online, July 16, 2004.
- WTO. 2004. Doha Work Programme. JOB(04)/96.

부록: 농업통상용어 설명

기본 골격안(Framework)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 확정을 위해 WTO 협상에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초안을 의미함.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조치를 뜻함.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개도국에게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경기변동 대응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부활된 농업보조로서 생산량과 단수는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단가는 현재 가격에 연계하고 있음. 즉 과거의 생산량에 현재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됨.

가공도별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상품의 가공 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수출국의 가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짐.

관세조화(Harmonization of Tariffs)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하기 위한 관세인하방식임.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 관세(In-Quota-Tariff Rate, IQTR)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대하여 고율 관세(Out-of Quota-Tariff Rate, OQTR)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관세율제도임.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WTO 농업협정상 농업 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비교역적 관심 사항(Non-Trade Concerns: NTC)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를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농업협정에서는 농업 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 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WTO 농업협정 제6조 5항>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됨.
-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됨.

세부원칙(Modality) 하나의 협정이 실행될 방식을 규정하는 지침임. 2000년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부원칙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WTO에서 현재 진행중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UR 농업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 보조 등 3개 의제중의 하나로 농산물 수출 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루는 분야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UR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WTO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 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타결하는 원칙임.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음.

최소 허용보조(De-minimis)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농업 생산액의 5% 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허용대상농업보조(Green Box)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 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KREI 농정연구속보 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4. 7. 20

발 행 2004. 7. 21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